

# [영천 아이존빌스타]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I. 공급개요 및 규모

- 공급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망정동 468번지(경상북도 영천시 창신1길 35, 망정동 아이존빌스타)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2층, 아파트 15층~21층, 아파트 9개동 852세대 중 우선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총 731세대
- 본 아파트는 국민주택인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으로 (주)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공급된 공공주택이며, 임대사무기간 5년이 경과되어 우선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를 일반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부 부양	생애최초	
국민주택	59.9491A	59A	59.9491	26.2832	86.2323	165	16	16	33	4	41	55
	59.8378B	59B	59.8378	26.3111	86.1489	141	14	14	28	4	35	46
	59.8993C	59C	59.8993	28.1503	88.0496	173	17	17	34	5	43	57
	84.9598	84	84.9598	25.4156	110.3754	252	25	25	50	7	63	82
합 계						731	72	72	145	20	182	240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 수 : 총 72세대

구 분	59A형(예비)	59B형(예비)	59C형(예비)	84형(예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3(1)	3(1)	4(1)	4(1)
	장기복무 세대군인	3(1)	2(0)	3(1)	6(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0)	3(1)	2(0)	5(2)
	중소기업 근로자	4(1)	3(1)	4(1)	5(2)
	장애인	4(1)	3(1)	4(1)	5(2)
합 계	16(4)	14(4)	17(4)	25(9)	

## II. 특별공급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18.(금)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등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천한자를 대상으로 함.(단,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무통장 청약 가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정의

2018.12.11.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손(배우자의 직계존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ex)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ex)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ex) 전혼자녀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한차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함)

- 행정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여부,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한국감정원에서 명단으로 관리되며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세대주 및 주택소유여부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 가능하시므로 추첨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 및 계약불가]

### Ⅲ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청약홈)신청이 원칙이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Ⅳ.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집공고일 전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된 경우 청약 당첨 후에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해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0.12.18.(금)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 특별공급 및 기타 분양관련 문의는 051)867-81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